우송조리아카데미 연계교육 운영규정

제 정 2002. 3.
개 정 2021. 4.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교육원은 우송조리아카데미(WCA, The Woosong Culinary Academy: 이하 “본 교육원”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교육원은 우송대학교 외식조리학과와 우송정보대학 외식조리과(이하 “양 대학”과 "외식조리학과"로 사용한다) 학생들(이하 “재학생"이라 한다)의 연계교육을 추진하고 아울러 외식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사업) 본 교육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양 대학 외식조리학과의 연계적인 이론 및 실기 교육과정 수행
2. 일반인 및 조리전문가 대상으로 하는 특별과정 및 공개강좌 운영
3. 국내.외 조리전문교육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
4. 조리교육분야에 관한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5. 외식관련 벤처 운영 및 기술지원
6. 산학협력추진 및 취업지원 사업
7.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사업
8. 기타 본 교육원의 목적에 기여하는 사업

제4조 (위치) 본 교육원은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226-2번지 우송타워 내에 둔다.

제2장 조 직

제5조 (원장) ①본 교육원에는 원장과 부원장을 두며, 양 대학의 전임교원 또는 비전임교원 및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한다.(2021.04)

②원장은 본 교육원을 대표하며 업무전반을 통할한다.

제6조 (직원) 본 교육원에는 필요에 따라 직원, 행정조교, 실습조교 및 근로학생 등을 둘 수 있으며 이들은 원장의 명을 받아 교육원 운영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직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독립채산제기관운영규정 및 양 대학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7조 (교원 및 시간강사의 임용) ①본 교육원의 학과 연계교육과정 및 특별과정의 강의를 담당할 교원 및 시간강사를 다음과 같이 임용한다.

1. 교원이라 함은 전임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를 말하며 양 대학의 채용기준에 따라 임용하며, 그 처우는 상호계약에 의하되 양 대학의 기준을 준용한다.
2. 시간강사는 본 교육원의 자체기준에 따라 원장이 위촉하여 양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처우는 본 교육원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른다.
3. 재학생의 현장실습을 지도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지도교수를 별도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우는 별도로 정한다.

②급여, 인사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양 대학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①본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할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으로는 우송대학교 총장 및 부총장과 우송정보대학 총장 및 부총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양 대학의 처장 중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우송대학교 총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간사위원을 위촉하여 제반 사항을 관장하도록 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설치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
4. 교육인원 및 교육비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9조 (산학협력위원회) ①본 교육원과 조리관련 산업체와의 지식과 정보의 교환을 통한 산학연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위원회를 두며, 본 교육원의 교수, 외식조리후원회원 및 외부 협력교수로 구성한다.

②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체측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양 대학의 산학협력위원회규정을 준용한다.

③산학협력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원과 산업체간의 연계체제 확립
2.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에 관한 협의 자문
3. 산업체 인사의 강의 및 실습지도 등의 교육 참여
4. 교과운영 및 평가에 관한 협의와 자문
5. 재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 등에 관한 협조
6. 산업체의 위탁교육 및 산업체 학습시설 이용
7. 장학금 및 산학협력기금의 확보
8. 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제10조 (교수회)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실무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교육원 소속 교수로 이루어진 교수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시행한다.

제3장 학과 연계교육과정의 운영

제11조 (연계교육 협약체결) 양 대학이 체결한 연계교육협약에 따라 외식조리학과 재학생의 연계 교육과정 추진을 위한 세부사항은 이 규정의 세부 조항에 따른다.

제12조 (수업 및 재학연한) 양 대학 외식조리학과 재학생의 수업 및 재학연한은 양 대학 학칙에 따른다.

제13조 (학년) 재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양 대학의 학칙에 따른다.

제14조 (학기 및 학습형태) ①매년 학기는 1, 여름,2, 겨울학기로 한다.

②재학생의 현장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실습학기제를 운영한다.

③수업시간은 본 교육원에서 별도로 계획하여 운영한다. 이에 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다.

제15조 (수업일수) 매 학기별 수업일수는 양 대학 학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업일수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하는 학생입학에 관한 사항은 양 대학 학칙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다만, 양 대학 외식조리학과의 연계교육의 실시에 따라 우송정보대학 외식조리과 학생의 우송대학교 외식조리학과 편입시 연계교육 지침에 의거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17조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양 대학 학칙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8조 (교육과정) ①교육과정은 양 대학 외식조리학과의 연계교육 추진에 따라 1학년과 2학년 과정은 공동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교과목의 개설, 교과 및 이수의 구분, 실험실습의 부과, 학점배점, 학점단위, 이수학점, 수강신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양 대학 학칙에 근거한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9조 (타학교 등의 학점인정) ①재학중 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의 다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교환학생, 학점교류학생, 해외 유학.연수생, 학점인정기관의 교류학생, 가상대학(학점인정기관)의 수강학생으로서 취득한 학점은 심사를 거쳐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학점인정 범위등 세부사항은 양 대학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졸업에 관한 사항) ①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전 교과의 총 평균평점이 1.50 이상인 자에게는 양 대학 학칙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

②졸업과 관련한 사항은 양 대학 학칙에 따른다.

제21조 (학생활동) ①재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창의적인 학구능력을 배양하고 학생자치활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학생단체를 둔다.

②양 대학의 학생단체와 별도로 교육원내에 둘 수 있으며, 교수회의 심의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

③승인된 단체는 교육적 목적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④학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원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양 대학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포상과 징계) ①양 대학의 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양 대학 학칙의 징계 및 학사경고에 해당하는 자는 규정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 등의 징계를 취할 수 있다.

③포상과 징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양 대학의 학칙 및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 (납입금) ①매학기가 개시되기 전에 지정된 등록기일까지 소정의 수업료와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입금액은 학기 단위로 정한다.

②납입한 납입금은 과오로 인한 것 이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제24조 (장학금) ①본 교육원의 소속 재학생에게 관련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양 대학의 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국가 유공자 및 그 자녀에 대하여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장학금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본 교육원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하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 대학의 장학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특별과정 및 공개강좌의 운영

제25조 (특별과정 및 공개강좌 운영) 본 교육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학생이외의 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조리분야 산업체 경영자, 종사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하거나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26조 (교육일수) 교육생 대상 강좌의 주 교육일수 및 수업시간은 교수회에서 협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27조 (지원자격) 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과정에 대하여는 학력.자격.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 (선발방법) 교육생은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설치과정 등) ①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치과정 및 교육인원은 별도로 정한다.

②제1항의 설치과정과 교육인원 및 제30조의 교육비 등은 교수회의 협의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30조 (교육비) ①본 교육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교육비의 반환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수료 및 수료증 교부) ①본 교육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설치과정의 교과목을 70%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별첨 1)을 교부할 수 있다.

제32조 (자치회)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3조 (교육생 활동의 금지) 교육생은 본 교육원 학습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34조 (포상) 학습 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교육생에게는 수료시 포상할 수 있다.

제5장 회 계

제35조 (회계년도) 본 교육원 회계년도는 대학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6조 (예.결산) ①원장은 매년 12월중 예산운영계획서 작성하여 익년도 1월 15일까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회계집행에 대한 결산보고서는 2월 말일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수입원) 본 교육원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특별교육과정등의 교육비
2. 양 대학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3. 위탁교육 지원금(위탁훈련시)
4. 판매수익 등 기타 수입

제38조 (회계집행) ①본 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 교육원에서 관장한다. 특히, 교육생을 대상으로하는 특별과정등의 교육비는 본 교육원의 교육운영비와 자체발전 등을 위해 사용한다.

②재학생의 수업을 위한 강사료, 집기 및 비품구입비,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 실습재료비 등은 양 대학에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기 타

제39조 (규정준용) 재학생의 학사 및 학생생활 전반에 대한 다른 사항은 소속 대학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0조 (기타) 본 교육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